

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

전문위원 정준화

I. 개관

1. 의의

- 증거인멸의 죄는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증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증거인멸죄와 위증죄를 같은 장(제10장)에 규정하였음
- 증거인멸죄 양형기준을 기존 위증범죄군 양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함

2. 보호법익

- 국가의 사법기능

II. 양형기준 설정범위

적용법조	죄명	구성요건	법정형
§ 155①	증거인멸	·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, 은닉,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	5년 이하의 징역 (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)
§ 155②	증인은닉	·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	5년 이하의 징역 (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)
§ 155③	모해목적 증거인멸	·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	10년 이하의 징역

III. 범죄유형 분류

1. 일반원칙

-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
-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
-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

2.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

- ▣ 대유형: 위증, 증거인멸·증인은닉의 2개 대유형으로 분류함
- ▣ 소유형: 위증죄의 소유형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함
 - 구성요건 체계가 유사하고, 법정형의 징역형 범위가 동일한 점 감안함
 - 위증죄(5년↓), 모해 위증죄(10년↓)
 - 증거인멸/증인은닉(5년↓), 모해 증거인멸/증인은닉(10년↓)

3. 최종 유형분류

1. 위증

⇒ 기존 양형기준과 동일함

2. 증거인멸·증인은닉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증거인멸·증인은닉			
2	모해 증거인멸·증인은닉			

IV. 형량범위 검토

1.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

▣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

-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,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% 내지 80%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,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

▣ 법정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

2. 형량범위 검토

가. 양형자료 조사 결과

1) 선고내역

세부죄명		선고내역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
위조증거사용	수	0	2	2
	비율	0.0	100.0	100.0
증거변조	수	0	1	1
	비율	0.0	100.0	100.0
증거위조	수	0	9	9
	비율	0.0	100.0	100.0
증거은닉	수	0	4	4
	비율	0.0	100.0	100.0
증거인멸	수	4	9	13
	비율	30.8	69.2	100.0
전체	수	4	25	29

세부죄명		선고내역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
	비율	13.8	86.2	100.0

2) 형량분포

세부죄명		실형형량(월)								전체
		1	2	3	4	6	8	10	12	
증거인멸	실형수	0	0	0	0	0	1	2	1	4
	실형비율	0.0	0.0	0.0	0.0	0.0	25.0%	50.0%	25.0%	100.0%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형량(월)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8	10	12	18	
위조증거 사용	수	0	0	0	0	0	2	0	0	0	0	2
	비율	0.0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100.0
증거변조	수	0	0	0	0	0	1	0	0	0	0	1
	비율	0.0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100.0
증거위조	수	0	0	0	0	0	4	4	1	0	0	9
	비율	0.0	0.0	0.0	0.0	0.0	44.4	44.4	11.1	0.0	0.0	100.0
증거은닉	수	0	0	0	0	0	2	1	0	1	0	4
	비율	0.0	0.0	0.0	0.0	0.0	50.0	25.0	0.0	25.0	0.0	100.0
증거인멸	수	0	0	0	1	0	7	1	2	2	0	13
	비율	0.0	0.0	0.0	7.7	0.0	53.8	7.7	15.4	15.4	0.0	100.0
전체	수	0	0	0	1	0	16	6	3	3	0	29
	비율	0	0	0	3.4%	0	55.2%	20.8%	10.3%	10.3%	0	100.0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집유형량(월)									전체
		2	3	4	5	6	8	10	12	18	
위조증거 사용	수	0	0	0	0	2	0	0	0	0	2
	비율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100.0
증거변조	수	0	0	0	0	1	0	0	0	0	1
	비율	0.0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100.0
증거위조	수	0	0	0	0	4	4	1	0	0	9
	비율	0.0	0.0	0.0	0.0	44.4	44.4	11.1	0.0	0.0	100.0
증거은닉	수	0	0	0	0	2	1	0	1	0	4
	비율	0.0	0.0	0.0	0.0	50.0	25.0	0.0	25.0	0.0	100.0

단위: 명, %

세부죄명		집유형량(월)									전체
		2	3	4	5	6	8	10	12	18	
증거인멸	수	0	0	1	0	7	0	0	1	0	9
	비율	0.0	0.0	11.1	0.0	77.8	0.0	0.0	11.1	0.0	100.0
전체	수	0	0	1	0	16	5	1	2	0	25
	비율	0	0	4%	0	64%	20%	4%	8%	0	100.0

나. 형량범위 제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증거인멸·증인은닉	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3년
2	모해 증거인멸·증인은닉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4년

- ▣ 형법 제10장(위증과 증거인멸)에서 위증죄와 같이 구성되었고, 구성요건 체계와 법정형이 동일
- ▣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국가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면에서 본질을 같이 함(다만, 증거인멸의 죄는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유·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여서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위증범죄와 구별됨)
- ▣ 형량범위를 위증죄와 동일하게 설정함

3. 최종 권고 형량범위

2. 증거인멸·증인은닉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증거인멸·증인은닉	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3년
2	모해 증거인멸·증인은닉	6월 - 1년6월	10월 - 2년	1년6월 - 4년

V. 양형인자

1.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

- ▣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

2.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누범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 가담 ○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적 대가의 약속 ○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○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
1) 특별감경인자

- ▣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

우

- 위증의 죄에서의 특별감경인자인 ‘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’ 와 상응하는 인자로 규정

▣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위증범죄에서는 ‘특히 참작할 사유’ 중 하나인 ‘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’ 만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

- 증거인멸범죄는 위증범죄와 달리 친족간 특례 규정이 있는 점, 법률상 선서의무에 위반한 위증죄는 ‘특히 참작할 사정’ 을 ‘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경우’ 로 좁혀서 제한할 당위성이 있으나, 증거인멸죄는 그와 달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‘범행가담’ 뿐만 아니라 ‘범행동기’ 에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

- 양형인자의 정의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- 본범과 사실혼, 연인,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,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▣ 농아자 /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/ 자수

2) 특별가중인자

▣ 경제적 대가의 수수

-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, 실제 사례에서 금전관계에 의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 있음
- ▣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 - 도주, 범인은닉·도피범죄군과 같이 양형인자 반영 필요성 있음
 - 실제 사례에서도 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’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‘조직적·계획적 범행’을 가중 양형사유로 판결문에 실시한 예가 있음
 - 양형인자의 정의
 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- ▣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
 - 위증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인 ‘위증이 신빙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’와 상응하는 인자로 반영함
- 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/ 동종 누범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
3) 일반감경인자

- ▣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
 - 디지털 증거 등을 훼손하였다가 쉽게 복원한 경우에는 결과불법을 차별화해서 평가할 수 있음
 - 양형인자의 정의

-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.

- ▣ 소극 가담 /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/ 진지한 반성 / 형사처벌 전력 없음

4) 일반가증인자

- ▣ 경제적 대가의 약속
 - ‘경제적 대가의 수수’ 를 특별가증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 고려
- ▣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/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
 - 위증범죄군의 양형인자 참고
- ▣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위증, 범인은닉, 무고 등 포함)

V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적 대가의 수수 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○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○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○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 등)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적 대가의 약속 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○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○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

	거를 인멸한 경우 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○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	○ 피고인이 고령 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
--	--	--